

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전문요원 수련 이수기준 완화 안내

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실습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완화된 수련 이수기준을 **2021년 수련과정에도 연장·적용함**

※ 수련 이수기준 완화 내용은 2020년도 안내와 동일함

□ 수련 이수기준 완화 내용

○ (교환수련 기준 완화)

- 기관 간 교환수련이 어려운 경우 교환 실습(208시간)을 **자체 실습으로 대체**하는 것을 인정
- 자체실습이 어려운 경우 교환수련 시간(208시간)을 1/2까지 확대하여 **교환 실습을 최대 312시간**까지 인정

기존	기준 완화 시
실습 830시간 (자체실습 622시간 + 교환실습 208시간)	▪ (기존유지) 자체실습 622시간 + 교환실습 208시간 ▪ 자체실습 518시간 + 교환실습 312시간 ▪ 자체실습 830시간

○ (간접(대체)실습 인정)

- 대면 실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, 실습 830시간 중 **1/4시간(208시간)까지 간접(대체)실습***으로 **대체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**

* (간접실습) 시뮬레이션 실습, 과제, 관련 수업 동영상 참관 등

** 간접(대체)실습 인정 내용의 예시는 [붙임1] 참고

기존	기준 완화 시
실습 830시간 (간접(대체)실습X)	▪ 직접실습 622시간 + 간접(대체)실습 208시간 * 실습시간의 1/4(208시간)은 간접(대체)실습으로 운영 가능

□ 간접(대체)실습 운영 안내

- 간접(대체)실습은 수련지도요원의 승인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론 교육과 실습 시간이 중복인정 되지 않음
-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간접(대체)실습의 내용을 기재하고, 지도요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
- **간접(대체)실습은** 해당 과목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, **증빙자료**(보고서, 이수증, 확인서 등)를 해당 수련기관에서 **반드시 보관 (3년 기간)**하여야 함.
 - 수료보고 시 기관장의 확인(직인) 후 간접(대체)실습 확인서 제출
 - * (제출방법)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제출
- 비대면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진행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수료보고 시 수련과정 이수기준 완화에 따른 수련운영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- *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7조제7항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로 간주함
- 수련기관의 장은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여 수련생 수료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 - ※ 수련 운영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유의하여 충실한 수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

붙임1

간접(대체)실습 인정 내용의 예시

※ 보고서 1편 작성 시 실습 4시간 인정 가능하며, 보고서 작성 시 ‘공통실습과목 실습보고서 양식’을 준용하여 A4 2페이지 내외분량으로 작성, 단순 도표 및 그림, 조직도 삽입 등은 내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
□ 공통실습

과목명	인정 내용의 예시
공공보건·복지 전달체계의 이해 (16시간)	-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 중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과 역할을 포함한 소개 자료(예: 기관홈페이지), 관련 법 등을 학습 후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예) 4시간 학습 후 보고서 1편 작성 시 실습 8시간 인정 가능 4시간 씩 2일 동안 학습 후 보고서 2편 작성 시 실습 16시간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
타 직역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(8시간)	- 타 직역(1개 이상) 역할 소개 및 활동자료(예: 학회홈페이지), 관련 법 등을 학습 후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 - 화상실습(예: 해당직역의 전문요원이 온라인(화상)을 통해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 등)을 통해 학습 후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, 화상 실습 진행 사진(접속 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캡처하여 첨부)
재난의 이해 (8시간)	-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작한(재난의 이해, PFA) 온라인교육 수강 후 실습활동지 제출 및 ‘재난의 이해’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, 이수증
응급위기관리 (8시간)	-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응급위기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(예: 기관 내 응급위기관련 자료, PPT, 영상자료 등) 학습 후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

중독질환의 이해 (8시간)	- 중독질환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(예: 수련자료실의 중독질환의 이해 공통실습 PPT, 중독관련 영상자료 등) 학습 후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
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(8시간)	- 해당지역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한 기관을 조사하고,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'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' 계획서 (예: '주민을 위한 정신건강행사 계획')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계획서 - 지도요원이 승인한 정신건강 주제의 비대면행사(온라인) 참여 후 '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' 실습보고서 작성 시 행사 실습시간 인정 가능 * 증빙자료: 수련실습일지와 수련감독일지에 내용 기재, 실습보고서, 행사안내 계획 또는 포스터, 비대면 행사참석 사진(접속 시간 확인이 가능한 행사의 경우 캡처하여 첨부)

□ 지역별실습

○ 정신건강임상심리 과정

과목명	인정 내용의 예시
임상심리연구 및 자문	- 기관 내 또는 학회에서 실시한 연구방법론 교육(워크숍 등)에 참석한 시간만큼 실습시간 인정 가능
심리평가 (및 지도감독)	- 기관 내 또는 학회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교육(워크숍 등)에 참석한 시간만큼 실습시간 인정 가능 - 심리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습시간 인정 가능
심리치료 (및 지도감독) 인지행동치료	- 심리치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습시간 인정 가능
심리자문	- 심리자문에 관한 국내외 사례와 개입방법 조사 등을 통해 실습시간에 충족하는 시간만큼 학습 후 실습보고서 1편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
지원업무의 실제 (2급/1급1년차)	-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(예,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,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

	등의 업무 및 활동자료 등을 통해 학습 후 임상심리사의 역할에 대한 ‘지원업무의 실제’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
프로그램 기획의 실제(1급2년차)	-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또는 2020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등을 학습 후 ‘프로그램 기획의 실제’ 실습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 가능
시설운영의 실제(1급3년차)	-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(예,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소,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)의 제반업무 조사, 설립 및 운영, 관련 법 등을 학습 후 ‘시설운영의 실제’ 실습보고서 작성 시, 실습시간 인정 가능

○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과정

과목명	인정 내용의 예시
퇴원계획 및 사후관리	- 퇴원이후 가정방문이나 기관방문 등을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진 회기로 대체하여 인정가능
가정방문지도 및 가족교육, 지역사회 자원조직 및 자원연계, 가정방문, 직업재활, 자조모임 등	※ 해당과목에 대한 과제(사례) 수행이 어려운 경우, 기관에서 수행 가능한 과제(사례)로 대체하는 경우 사례 인정가능 (총 20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제(사례)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체가능)

○ 정신건강간호사 과정

과목명	인정 내용의 예시
인간관계훈련 (24시간)	- ‘인간관계 훈련’ 관련 문헌, 영상자료 등을 통해 학습 후 실습 보고서 작성 시 실습시간 인정가능, 주제별 총 3편까지 작성 가능 예: 인관관계와 정신건강 열린강좌의 영상과 자료로 4시간 학습 후 ‘자기이해와 애니어그램’을 주제로 보고서 1편 작성 시 실습 8시간 인정 - 수련 기관에서 운영(온라인운영포함) 가능
정신건강사정 및 진단 발달단계별 정신간호 정신간호중재 및 치료	- 전화상담, 화상상담 등 비대면 실습 가능

붙임2**간접(대체)실습 확인서**

※ 간접(대체)실습을 시행한 경우 수료보고 시 기관장의 확인(직인) 후 간접(대체)실습 확인서 제출

→ (제출방법)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> 수련교육 > 수료보고에 등록

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간접(대체)실습 확인서

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 간접(대체)실습을 실시하고,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수련기관명 (직인)

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

이름	학술 시간	이론교육 시간	실습교육 시간* (A+B)	* 실습교육 시간 세부내용 * 총 8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.				증빙자료 유무
				교환 수련기관 교환실습 (A)		수련기관 자체실습 (B)		
				직접 실습	간접 (대체) 실습	직접 실습	간접 (대체) 실습	
ex)홍00	20	150	830	100	108	600	22	유
ex)전00	20	150	830	0	0	622	208	유
ex)성00	20	150	830	212	100	508	10	유